

2015년 제57회 사시 제2차시험을 마치고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응시생

김○○

I. 들어가며

시험에 임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더라도 처음 시험을 치르는 것인지 혹은 지난 일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등에 따라 해마다 같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올해로 2차 시험을 7번이나 치르게 된 저도 늘 한결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시험 기간이었지만, 그것이 같은 시험을 치른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심심풀이든 호기심이든 누군가 읽게 되리라는 생각에 이번 시험을 치른 저의 모습을 조심스레 적어볼까 합니다. 아래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II. 시험에 임하기까지

작년 짝수시에 불합격한 나는 다시 1차 시험을 치러야 했기에 상대적으로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1차 시험이 늦어져서 2차 시험까지 준비기간이 여느 해보다 짧았다. 때문에 모든 내용을 꼼꼼히 공부할 마음은 처음부터 과감히 포기하고 양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순환모의고사 문제와 올해 2·3 순환모의고사 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판례자료를 보충하여 시험을 준비했다.

악필인데다가 손까지 느려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는 늘 강박이 있었다. 그래서 매년 쓰는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십년을 넘게 잡힌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음을 절감하고 글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웠다. 다만 시간 안에 분량을 채우는 데 집중하여 시험 3일 전에도 답안지 작성을 연습하고 실전에서 최대한 핵심만 간략하게 쓰자고 다짐했다.

시험 장소는 고려대를 선택했다. 예년에는 본교에서 시험을 치렀기에 고시반에서 시험장을 걸어다녔으나, 올해는 본교에서 시험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고시반에서 제공하는 버스로 시험장을 오갔다. 소요시간은 가는 길에 20분, 오는 길에 35분 가량이었는데 책을 보면 속이 좋지 않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Ⅲ. 첫째 날

시험 전달은 반드시 첫째 날 과목을 공부해야하지만 계획이 많이 밀린 탓에 저녁 늦게 되어 서야 행정법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보통은 전날 준비했던 필기구며 응시표, 신분증 등을 미리 신경 쓰지 못했다. 오전에 헌법을 간단히 보고 급한 마음에 가방에 이것저것 담다 보니 짐이 예상보다 많았다.

시험장에는 시험시간을 1시간여 앞두고 도착했다. 시험을 치를 강의실은 2층으로 장소적으로 유리했다. 자리도 복도 쪽 줄의 앞에서 세 번째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 짐을 풀어놓고 간단히 화장실 위치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시험을 위해 열을 올렸다.

막판에 읽은 것은 헌법 핵심정리였다. 헌법재판의 적법요건이나 기본권 내용은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시험시간 30분 전, 책을 모두 교실 앞으로 내어놓으라는 방송이 나왔다. 대부분의 수험생처럼 마지막까지 읽을 책 하나를 들고 복도로 나섰다. 늦게는 문제지가 교실로 들어오는 시험시간 5분가량 전까지 복도에 남아있는 수험생도 적지 않았으나 나는 최소한 15분 전에는 자리에 앉았다. 답안지 작성에 강박이 있었으므로 문제지를 받기 전에 답안지에 적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기록하고, 시간을 고려한 분량 배분 등에 조금 더 신경썼다. 그리고 법전에서 자주 찾아보게 되는 조문은 반으로 접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목차 잡는 데 활용할 응시표 뒷면도 쓰기 좋게 공간을 넋으로 나누어 두었다. 그리고 손을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응시표 뒷면에 주의사항을 써 보았다. 시작 전 1분, 눈을 감고 심호흡을 두어번 한 뒤 문제지 라벨을 뜯을 준비를 하고 시작 종을 듣기 위해 귀를 쫓긋이 하고 있었다.

1. 헌법

문제지를 펴고 가볍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훑어보았다. 헌법은 첫 날 첫 시험으로 일단 다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사안 포섭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이라고 들었다. 때문에 아는 문제는 최대한 간략하게 쓴다는 마음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없는지 보았다.

1문은 법령헌법소원의 요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표현의 자유 검열금지 원칙 등 비교적 어렵지 않게 쟁점들이 보였다. 2문의 경우도 2문의1이 쟁점 대비 배점이 크다는 것 외에 전반적으로 무난한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서 헌법은 한번도 제대로 마지막까지 답안지를 써낸 적이 없어서 1문 시작부터 간단히 쓰려고 마음 먹었다.

시간배분은 기본적으로 전체 대충 훑고 1문 목차 잡는데까지 15분, 2문 목차 10분, 답안 작성은 각각 45분씩하고 마지막으로 5분은 검토할 계획이었다. 일반론은 최대한 줄이고 분량이 넘칠 것 같으면 일반론에 포섭을 같이했다. 1문의 헌법소원요건과 표현의 자유의 내용 등은 직전에 핵심정리에서 본 내용들을 떠올리며 어렵지 않게 써낼 수 있었다. 속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2문의1 작성하는데 조금 더 공을 들였다. 그런데 나중에 2문의2를 쓰

려고 하니 10분이 간신히 남는 정도였다. 답안지에 일정 분량마다 도달해야하는 시간을 작은 글씨로 표시해놨는데 실수로 1문 2문 답안지를 바꿔 그 시간을 착각한 것이었다. 결국은 본래 예상과 달리 2문의2는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부랴부랴 마무리를 지어 답안지를 내야했다.

감독관에게 1문 2문 답안지를 바꿔줬노라 말했다니 1문에 인쇄된 숫자 '1'을 '2'로, 2문에 인쇄된 숫자 '2'를 '1'로 볼펜을 이용해 그냥 문게 덮어썼다. 별도로 싸인을 하거나 하지 않아 이것으로 충분한가 의문도 있었지만 나중에 누군가에게 물으니 원래 그렇게 한다더라. 답안지를 걷어갈 때 다른 사람들 답안지를 보니 예년과 달리 2문 뒷면이 대부분 채워져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점심으로 김밥을 먹으며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답안지 많이 채웠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다. 밥은 편하게 먹으려고 따로 책을 보지는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기도 했다. 딱히 무거운 표정은 눈에 띠지 않았다.

2. 행정법

문제지를 받고 대충 훑었을 때 직전에 본 쟁점 중 무효확인의 소 보충성과 원고적격 등이 눈에 띄어 내심 쾌재를 불렀다.

1문은 하자승계 외에 신고의 처분성,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문제되는 듯 했고, 2문은 무효확인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선결문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 등이 문제되는 듯 했다. 이렇듯 대충의 쟁점이 눈에 띄었으나 다만, 1문의 설문1이 배점이 25점인데도 불구하고 쟁점이 하나 밖에 보이지 않아 다소 고민을 해야했다. 문제에서 제시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행정제재법률효과의 승계도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논리에 의해 끌어들여야할지 막상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늦은 탓에 오래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써내려가 보기로 했다. 필요한 단어가 들어가면 흐름과 무관하게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 생각나 억지로 두가지 쟁점을 마지막에 끼워넣었다.

1문의 설문3은 법적 성질이 행정조사인 것으로 보였으나 행정조사는 작년에 기출되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았다. 때문에 법적성질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로써 처분성을 검토하고 이하 권리구제 수단을 서술했다. 일단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뒤에 문제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였다.

2문의1은 무효확인의 소 보충성에 관한 것으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다. 다만, 직전에 본 것을 상세히 쓰다가 분량 조절에 실패한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다소 길어져 2문의2를 써야할 때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설문2는 판례와 설문 해결을 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늘 분량배분과 시간관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첫 날부터 지키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웠다. 그러나 다음 날 시험을 위해 마음을 다시 다 잡고 고시반으로 돌아왔다. 도착한 직후

머리가 멍한 상태여서 잠시 산책으로 머리를 식힌 후 책상 앞에 앉았다. 우선 민사소송법을 간단히 본 뒤, 상법 기본서를 펴 중요쟁점 위주로 발췌독을 하였다. 최대한 책을 읽고 다음 날 기본서는 두고 판례자료만 시험장에 가져갈 계획이었다.

IV. 둘째 날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머리가 멍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전날 일찍 잤다. 그런데 전날 6시 무렵에 눈을 떴을 때와는 달리 7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내리는 비도 한뭇 한 듯하다. 급한 마음에 상법 기본서를 급히 마무리하고 간단히 판례자료만 챙겼으나 민사소송법은 기본서를 챙겨야했다.

1. 상법

준비한 판례자료가 얼마 되지 않아 시험 직전에 두어번 읽어 볼 수 있었다. 마침 문제지를 받아 문제를 읽어 보니 직전에 읽었던 판례 중에 걸리는 문제가 제법 있었다.

1문에서 설문2의 이사 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의 의미, 설문4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설문5 이종대 표소송 인정여부가 그것이었다. 다만, 설문1의 이사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 의미에 대해 중요쟁점으로 봤던 것이 잘 기억나지 않아 결론 위주로 간략하게 써야 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문제는 시간이었다. 1문에 직전에 본 판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자연스레 쓰는 양이 많아졌고 1문을 모두 썼을 때는 예정 시간을 10분이상 초과했다. 특히 2문의 2는 비교적 쟁점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할 수 없어 조문을 찾아 써야했기에 시간 초과는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 2문의2를 쓸 때 중간에 공간을 두고 결론부터 작성해두었다. 그리고 종료종이 울릴 때까지 가능한 많은 내용을 채우려 했지만, 마지막 문제는 내용을 거의 쓰지 못하고 조문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점심을 먹으며, 그나마 상법까지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과목이었으므로 앞으로 나온 점수를 받겠노라 다짐했다.

2. 민사소송법

시험 직전에는 기본서를 펴서 중요쟁점을 위주로 발췌독하였다. 그래도 민사소송법부터는 순환모의고사를 확인한 과목인지라 눈에 더 잘 들어왔다. 그덕에 책을 가방에 넣어두고 자리에 앉았을 때는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 시작 종이 울리고 문제지를 펴 보았다. 그런데 막상 쉽사리 서술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았다.

1문은 무변론패소와 피고적격, 부인과 항변의 구별, 임의적당사자변경 등이 출제되고 2문은 채권자취소권, 상소불가분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출제되었는데 서술이 용이한 전형적인 문제는 임의적당사자변경에 관한 설문 정도였다. 한편, 1문의 설문1은 얼핏 보면 무변론패소와 피고적격정도만 문제되어 배점(15점)에 비해 쟁점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

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있어 쟁점이 적지 않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남들은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차별화된 답안을 쓰겠다는 욕심에 분량을 다소 초과했다. 설문1에서 밀린 분량은 뒤에까지 영향이 미쳐 1문 4면을 꽉 채웠다. 손이 느린 탓에 보통은 3면 반을 써야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시간이 20분이나 초과되었다. 2문의1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것으로 수험서에 많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민법 기본서에서 보았던 피고와 관련한 법적 성질을 쓰면서 내내 기분이 짹짹했다. 2문의2도 어떻게 써야할지 구상할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무작정 결론을 내려 상소불가분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눈에 보일 정도 서술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시험의 반이 지나가고 돌아오는 길에 이래저래 생각이 많았다. 그간 수도 없이 많은 답안지를 연습했으면서도 정작 실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된 답안지를 한번도 써내지 못한 자신에 대해 많이 화가 났다. 나중에 민사소송법 1문의 설문1이 무변론패소판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좌절했다. 하지만 성격상 부정적인 생각에 그리 오래 빠져있지 못한 탓에 그나마 올해는 작년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계속 자신을 위로했다.

V. 셋째 날

항상 2차시험은 셋째 날이 폭탄이었다. 형법은 시작을 잘못하면 전혀 다른 답안지를 쓰기도 하고, 형사소송법은 관련 판례를 모르면 전혀 손을 못 대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과락도 많이 나온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시험이 어려운 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늘 개인적인 강박이므로, 시험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들도 흔히 분량을 놓치기 때문에 나의 과오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시험성적을 확인해보면 어려운 과목이 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런 의미로 셋째 날은 나에게 기회의 날이었다. 그래서 문제지를 받아드는 순간까지 부디 문제가 어렵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1. 형법

작년 시험에서 문제를 잘못 읽어 점수를 많이 놓쳤던 과목이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1문은 타인예비와 예비의 종법, 교사의 이탈,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인정여부와 죄수 등이 문제되었다. 2문은 배임수재죄와 뇌물죄의 추정관계 그리고 소극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하여 범행한 경우 죄책 등이 문제되었다. 실제로 답안을 작성해가면서 1문의 설문2에서는 특별법과 관련하여 숨은 쟁점이 있는 것 같았으나 확신이 서질 않았다. 그러나 배점 대비 쟁점이 별로 없는 듯하여 일단 생각나느대로 써내려갔다. 2문의1 역시 배점 대비 쟁점이 적어 답안지를 작성하면서도 고민이 많았다.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수뢰죄와 관련한 추정 범위는 판례 결론만 쓰고 그에 따른 해결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마지막 문제도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공범과 신분에 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촉박한 탓에 매끄럽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종종 생소한 최신판례가 작은 배점으로 나와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최신판례를 위주로 확인했다. 문제지를 대충 훑어 보니 올해는 2문에서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와 모욕죄로 인한 현행범 체포에 관련된 문제가 그런 것 같았다. 그런데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관련판례가 명확하지가 않아 자신이 없었으므로 다른 문제를 최대한 간략히 쓰고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1문은 비교적 전형적인 전문증거가 주로 출제되었고, 그 외에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그리고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등이 출제되었다. 쟁점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어 다소 실망면서도 부지런히 답안지를 작성했다.

문제에 너무 자신이 있었던 탓일까. 어느 새 1문 답안지 4면을 꽉 채우고 말았다. 역시 시간은 20분 정도 초과. 2문을 시작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일단 목차는 대충잡고 답 위주로 작성했는데, 급한 마음에 조문을 찾는 것도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중요조문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답과 직결되는 내용만 서술했다. 반전을 꿈꾸던 셋째 날 시험은 무난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남은 과목에 더욱 열을 올리기로 했다. 민법은 좋아하는 과목이면서도 늘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해 공을 많이 들이는 과목이었다. 양이 너무 많아 전날 공부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생각에 느슨하게 공부한 적도 있었으나 그해 점수를 받아 보고 후회를 많이 한 기억이 있다. 이번에는 기본서 회독도 하고 모의고사도 풀어 나름 준비하는데 수월함도 있었다.

Ⅵ. 넷째 날

둘째 날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날이 완전히 개어 말 그대로 화창한 날씨였다.

1. 민법 1교시

1문은 비교적 평이한 쟁점들이었다.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법정지상권, 미등기건물의 경매 등이 문제되었다. 다만 설문4는 공동상속인과 수증자의 유류분 반환을 묻는 문제로 학원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 같았다. 다행히 민법 기본서는 교수저로 보는 나로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답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 즐거운 마음으로 인해 또다시 답안지 분량이 크게 초과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2문을 작성하기 위해 30분 밖에 남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문의1은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하는 경우 법률관계에 관해 배점이 30점인 복잡한 문제였기에 시간이 없다고 목차를 잡지 않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2문의2도 도급과 관련된 간접이행보조자책임이 문제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만 있을 뿐 명확히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었다. 어느 교수님이 아는 문제는 간단히 쓰고 그렇게 남은 시간으로 모르는 문제는 최대한 공을 들여 쓰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마음과는 달리 2문의1에 공을 잔뜩 들이고 20점이 나 되는 2문의2는 5분도 안되는 시간에 답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점심을 먹으면서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했다. 그나마 나쁘지 않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상당히 공을 들인 민법에서 20점 상당을 그냥 날린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잠시, 일단 남은 시간에 집중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20점짜리를 통째로 날렸지만 면과락을 한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잡았다.

2. 민법 2교시

설문1은 비법인사단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판단 및 대표이사의 표현대표가, 설문2는 비법인사단에 대해 제35조 유추 문제, 그리고 설문3은 대상청구권이 전면적으로 나왔으며, 설문4는 종종 결의에 관한 일반조항의 적용 및 재산관계에 대한 결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설문2는 어떤 식으로 답을 서술할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2교시는 1시간 짜리 시험임을 감안해 설문3은 일단 공간을 비워놓고 답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조금은 막연할지도 모르는 설문4에 조금더 공을 들이고 설문3은 간략히 제35조에 대한 언급을 했다.

시험을 끝내고 지인들과 택시를 타고 고시반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지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봇물처럼 튀어나왔다. 서로 궁금했던 의문점들을 제시하며 저마다의 답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어차피 모범정답이 있는 시험은 아니었지만, 서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는 안도하고, 유독 달리 쓴 사람이 있는 경우는 우울해하기도 했다. 나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생각은 둘째 치고 일단 시험이 끝났다는 후련함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VII. 맺으며

오랜 기간 시험을 치르며 시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 시험은 유난히 2차 시험 준비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시험 막바지에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도, 시험이 빨리 끝나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빨리 해방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매년 시험이 가까워지면 이러한 바람이 반복되지만, 해가 갈수록 그 강도는 더한 것 같다. 그나마 지난 1년을 돌이켜 부끄럼 없이 준비가 되었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분명해 심리적인 압박은 완화가 될테지만, 성격상 그리 철저한 사람이 되지 못하다보니 항상 마음이 쓰인다.

여차여차하여 시험을 마무리한 지금, 시험의 상대적인 평가야 이미 내 손을 떠난 문제이다. 다만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굳이 하자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위안을 가져본다.